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992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1. 최OO (95*****-2*****)

2. 최** (98*****-2*****)

3. 최@@ (05*****-4*****)

원고들 주소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원고들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피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

대표이사 원명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1. 24. 선고 2008가단10320 판결

변 론 총 결 2010. 5. 26.

판 결 선 고 2010. 6. 16.

주 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667,4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오모농(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2. 22. 18:15경 성지축산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지축산개발'이라고 한다) 소유의 09며7475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 소재 사방 IC에서 포항 방면으로 약 300미터 떨어진 지점 도로를 사방 IC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쇠기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2008. 2. 24. 16:0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03. 11. 4. 최##과 협의이혼하였다.

다. 피고는 성지축산개발과 사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및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2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2 차로에서 운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 변경하면서 진입하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중앙분리대 쇠기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망인이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4(을 제3호증의 1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5(을 제3호증의 21과 같다), 갑 제7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7, 갑 제7호증의 8(을 제3호증의 22와 같다), 을 제3호증의 17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다.

먼저, 갑 제7호증의 5는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주경찰서의 의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에서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로서, ① 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출음운전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이 핸들조향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며, ② 나아가 그 조사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7호증의 1, 2, 4, 을 제3호증의 19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의 단독사고로 판단·조사하여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으나, 망인의 전 남편인 최성식이 불상의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급하게 피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도로교통공단에 그와 같은 가능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것으로, 당초 수사기관에서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에 교통사고분석을 의뢰할 때 그 의뢰사항을 다른 차량과의 접촉여부 및 이 사건 사고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유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에서는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핸들조향을 시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른 차량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의뢰사항 이외의 단순한 운전 부주의나 야생동물의 출현 등으로 인한 사고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석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나머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

의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 내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갑 제7호증의 4, 8, 을 제3호증의 17의 각 기재는 망인의 전 남편인 최성식의 단순한 추측에 의한 의문의 제기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불상의 차량에 의하여 유발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정 _____

판사 서영애 _____

판사 허용구 _____